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전기통신부문

출처 : 신일본 ITU저널 Vol.24, No5

역자 : 김성권 부장/TTA표준화2국

〈목 차〉

제1301조 : 적용범위

제1302조 :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에의
access 및 그 이용

제1303조 : 고도 또는 부가가치 서비스의 제공조건

제1304조 : 기준에 관한 조치

제1305조 : 독점

제1306조 : 투명성

제1307조 : 다른 장과의 관계

제1308조 : 국제기관 및 국제협정과의 관계

제1309조 : 기술협력 기타 협의

제1310조 : 정의

머리말

미국의 자유무역추진에 관한 통상정책은 한편으로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를 통한 다각적 교섭을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양국간 교섭이나 지역간 교섭을 통해 미국 주변으로부터 자유무역을 확대해 간다고 하는 양면적인 경향을 보인다.

NAFTA는 '89년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을 멕시코까지 확대하여 지역경제통합을 도모하였다.

본 협정은 GATT상의 자유무역지역 요건인 역내관세·수입량 제한의 철폐에 그치지 않고 시장 진입, 통상규제,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 분쟁처

리, 금융, 섬유, 정부조달의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우려된다.

① 제한적인 원산지 규칙이 채용되면 GATT 제24조의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역 설정의 조건]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② NAFTA는 자유무역지역이며, 참가국의 대역 외 무역정책은 기본적으로 각국에 위임되기 때문에 역외국에 있어서는 역내 국경조치가 존속하는 것이다.

NAFTA 협정의 미국측 교섭담당인 미국통상 대표부는 전기통신 문제를 단순히 전기통신산업, 전기통신기기산업만에 관계되는 문제가 아닌, 이 지

역 자유무역을 성립시키는 기초가 되는 것으로 여겨 이 Telecom 협정을 특히 중시하고 있다. 이상의 상황에 입각하여 NAFTA 전기통신협정(NAFTA, 제13장 전기통신)을 소개한다.

NAFTA, 제13장 – 전기통신

(1994년 1월 1일 발효)

주 : 밀줄친 어구는 제1310조에 정의되어 있는 어구이다.

• 제1301조 : 적용범위

(1) 이 장은 아래사항에 적용한다.

- ① 사설통신망의 운용자를 포함하여 다른 협정체결국(이하 체결국이라 한다.)의 사람에 의한 공중전기통신전송망/서비스로의 access 및 그 이용에 관한 체결국의 조치
- ② 체결국 영역에서의 다른 체결국 사람에 의한 고도 또는 부가가치 서비스의 역내 또는 국경을 넘어선 제공에 관한 체결국의 조치
- ③ 공중전기통신전송망으로의 단말 기타 설비의 접속에 관한 기준 관계조치

(2) 방송국 및 유선방송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가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및 서비스로의 access 및 그 이용을 확보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 장은 라디오 또는 TV 프로그램의 방송 또는 유선방송에 관한 체결국의 조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과 같이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 ① 다른 체결국 사람에게 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전기통신전송서비스의 개설, 건설, 취득, 임대, 운용 또는 공급을 인가하도록 요구하는 것.
- ② 일반공중에게 제공되지 않는 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의 개설, 건설, 취득, 임대, 운용 또는 공급을 체결국에 요구하고, 또는 체결국이 그것

을 누군가에게 강제로 요구하는 것.

- ③ 사설통신망을 운용하는자가 그 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전기통신전송망/서비스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체결국이 금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 ④ 라디오 또는 TV 프로그램의 유선방송이나 방송에 종사하는 자에게 케이블 또는 방송설비를 공중전기통신전송망으로서 이용토록 체결국이 강제로 요구하는 것.

• 제1302조 : 공중전기통신전송망/서비스에의 access 및 그 이용

(1) 각 체결국은 영역내에서 또는 국경을 넘어 제공되는 전용선을 포함하여 모든 공중전기통신전송망/서비스에 대하여 다른 체결국 사람이 그의 사업을 위해서 하는 access 및 그 이용이 제2항부터 제8항에 규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 조건으로 행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제6항 및 제7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각 체결국은 다른 체결국 사람의 다음 행위를 허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① 공중전기통신전송망과의 인터페이스용 단말 기타 설비를 구입 또는 임차하여 설치하는 것;
- ② 해당체결국의 영역내 혹은 국경을 초월하여 전용선 혹은 사설회선과 공중전기통신전송망과의 상호접속(고객의 dial access 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을 포함)을 하는 것 또는 타인의 전용선 혹은 사설회선과의 상호접속을 당사자가 합의하는 조건으로 할 것;

③ 교환(switching), signaling 및 처리(processsing)의 기능을 다할 것;

④ 임의로 선택한 운용 프로토콜을 사용할 것;

(3) 각 체결국은 다음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① 공중전기통신전송서비스의 가격설정은 해당서비스의 제공에 직접 관계되는 경제적 비용을 반영

한 것일 것; 및

②전용선은 flat-rate pricing basis로 이용가능할 것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공중전기통신전송서비스 간의 상호보조(cross-subsidization)를 방해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4) 각 체결국은 다른 체결국 사람이 기업내 통신을 포함하는 영역내 또는 국경을 초월한 정보 이동을 위해, 또 어느 체결국 영역내의 데이터베이스 기타 타기계에 의한 독해가 가능한 형태로 축적되는 정보로 access하기 위해서도 공중전기통신전송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제2101조(일반적예외)의 규정에 더하여 이 장의 어느 규정도 체결국이 아래 게재내용의 필요 때문에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①message의 안전성 및 비화성 확보를 위해 ; 또는
②공중전기통신전송망/서비스 가입자의 privacy 를 보호하기 위해

(6) 각 체결국은 공중전기통신전송/서비스로의 access 및 그 이용에 대해 다음에 게재되는 것이 필요할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조건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공중전기통신전송망/서비스 제공자로서 공공사업자 책임, 특히 그 망 또는 서비스를 일반공중에게 이용가능케 하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 또는

②공중전기통신전송망/서비스의 기술적 일체성 (technical integrity)을 보호하기 위해

(7) 공중전기통신전송/서비스에의 access 및 이용의 조건이 제6항에 정해진 기준(criteria)을 만족하는 한 해당조건에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①해당서비스의 재판매 또는 공동이용의 제한 ;
②해당망 또는 서비스와의 상호접속을 위하여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을 포함하는 특정의 기술적 인터페이스 사용 요구 ;
③전용선 혹은 사설회선과 해당망 혹은 서비스와의, 또는 타인의 전용회선 혹은 사설회선과의 상호접속에 있어서 해당회선이 공중전기통신전송망/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경우의 상호접속 제한 ; 또
④면허, 허가, 등록 또는 신고절차에 있어서 투명성을 갖는 한편 그것에 의거하여 제출되는 신청이 신속히 처리될 것.

(8) 이 안의 적용상, [비차별적](non-discriminatory) 이란, 같은 상황하에서 같은 공중전기통신전송망/서비스를 위해, 다른 어떤 이용자보다도 불리하지 않는 조건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 제1303조 : 고도 또는 부가가치서비스의 제공조건

(1) 각 체결국은 다음을 확보해야 한다.

①체결국이 고도 또는 부가가치 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정하는 어떠한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신고 절차도 투명성을 갖는 한편 그것에 의거하여 제공되는 신청이 신속히 처리될 것 ; 또,

②해당 절차에 의거하여 요구되는 정보는 신청자가 업무 제공을 개시하기 위해 재정적 지불능력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또는 신청자의 단말 기타 설비의 체결국이 적용하는 기준 혹은 기술적 규제로의 적합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범위로 한정될 것.

(2) 체결국은 고도 또는 부가가치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

①그들 서비스를 널리 공중에게 제공하는 것 ;
②그 요금이 원가에 비추어 적정할 것 ;

③업무약관을 제출할 것 ;
 ④그 망과 특정고객 또는 망과의 상호접속 ; 또는
 ⑤공중전기통신전송망으로의 접속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상호접속은 측정기준 또는 기술적 규제에 따를 것.

(3) 제2항 ③의 규정에 관계없이 체결국은 아래에 의한 업무약관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체결국이 특정 케이스에 대하여 그 법률에 의거 반경쟁적으로 인정한 제공업자의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해당 제공업자로부터 ; 또는
 ②제1305조의 적용을 받는 독점사업체로 부터

• 제1304조 : 기준에 관한 조치

(1) 제904조 (4)(불필요한 장해)의 규정외에 각 체결국은 그 공중전기통신전송망에의 단말 기타 설비의 접속에 관한 기준에 관계되는 조치가 – 적합성평가절차를 위한 시험 측정기기의 사용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 아래 게재되는 한도 내에서 취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공중전기통신전송망으로의 기술적 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
 ②공중전기통신전송서비스로의 기술적 방해 혹은 그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
 ③전자장해를 방지하고 다른 전자스펙트럼 이용과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
 ④과금장치의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 ; 또는
 ⑤이용자의 안전 및 공중전기통신전송망/서비스로의 access를 확보하기 위해

(2) 체결국은 공중전기통신전송망으로 인가되어 있지 않은 단말 기타 설비의 접속에 대해, 허가를 요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단, 해당 허가기준이 제1항의 규정에 일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3) 각 체결국은 그 공중전기통신전송망의 망종단점 결정에 있어 합리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

다.

(4) 체결국은 제1항의 기준을 만족하는 보호장치 용으로 인가된 설비가 고객측에 접속되는 기기에 대해 별개의 인가를 요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된다.

(5) 제904조 (3)(비차별적 대우)의 규정외에 각 체결국은 :

①그 적합성 평가 절차가 투명성을 갖고 비차별적 인 점, 또 그것에 의거하여 제출되는 신청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중전기통신전송망에 접속되는 단말 기타 설비를 위한 해당 체결국의 적합성평가절차에 의거하여 필요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기술적 적격성을 갖는 어느 단체에 대해서도 시험결과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재점검하는 해당 체결국의 권리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해야 한다.

③그 관계 적합성 평가 기관에 있어서 전기통신 설비 공급자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인가 받는 것을 요구하는 체결국의 조치가 비차별적인 것을 확보해야 한다.

(6) 이 협정의 효력발생일 후 1년이내에 각 체결국은 그 적합성 평가 절차의 일부로서 인수측의 체결국 기준관련조치 및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시험을 위하여 다른 체결국의 영역내에 있는 연구소 또는 시험시설로부터 시험결과를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정해야 한다.

(7) 제931조 (5)(기준관련조치에 관한 위원회)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전기통신기준소위원회는 부속서 제913-B항에 게재된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 제1305조 : 독점

(1) 체결국이 공중전기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독점체를 유지 또는 지정하고 그 독점체가 직접 또는 관련회사를 통하여 고도 또는 전기통신관련제품

제공에 대한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결국은 그 독점체가 그들 시장에서 직접적이거나 그 관련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나를 불문하고 다른 체결국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독점적 지위를 이용 하여 반경쟁적 행위를 하지 않도록하여야 한다. 관련 행위에는 상호보조, 약탈적 행위(predatory conduct) 및 공중전기통신전송망/서비스로의 access의 차별적 제공을 포함한다.

(2) 관련 반경쟁적 행위의 방지를 위해 각 체결국은 다음과 같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회계상의 제요건 (accounting requirements);
②구조적 분리 (structural separation)를 위한 제요건;

③독점체가 그 경쟁상대에게 자신의 공중전기통신 전송망/서비스에의 access 또는 그 이용을 자신 또는 그 관련기업에 대한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용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규칙 ; 또는

④공중전기통신전송망 및 그 인터페이스의 기술적 변경사항을 적시에 공개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 제1306조 : 투명성

제1802조의 규정외에 각 체결국은 아래 사항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는 공중전기통신전송망/서비스로의 access 또는 그 이용에 관한 조치를 공개해야 한다.

- ①서비스 요금 기타 조건 ;
- ②해당망 서비스와의 기술적 인터페이스 규격 ;
- ③해당 access 또는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관련 조치의 작성, 결정에 책임을 갖는 기관에 관한 정보 ;
- ④공중전기통신전송망으로의 단말 기타 설비의 접속에 적용하는 조건 ; 및

⑤신청, 허가, 등록 또는 면허의 제요건

• 제1307조 : 다른 장과의 관계

이 장의 규정과 다른 장의 규정간에 어떤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그 불일치의 범위에 대해 이 장의 규칙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 제1308조 : 국제기관 및 국제협정과의 관계

체결국은 전기통신망 또는 서비스의 세계적 적합성 및 상호운용가능성을 위한 국제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전기통신연합 및 국제표준화기구를 포함하는 관련국제단체의 활동에 의한 표준화 촉진을 도모한다.

• 제1309조 : 기술협력 기타 협의

(1) 상호운용가능한 전기통신 전송서비스로의 infra-structure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모든 체결국은 기술정보의 교환, 정부대 정부의 훈련 프로그램 및 기타 활동의 진전을 위해 협력하는것으로 한다. 이 책무를 다하는데 있어서 체결국은 기존의 교환 프로그램에 특히 중점을 두는 것으로 한다.

(2) 체결국은 공중전기통신전송망/서비스를 포함하는 모든 전기통신 서비스에 대해 한층 자유무역화의 실행가능성을 판정하기 위한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한다.

• 제1310조 : 정의

이 장의 규정에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인정된 설비 (authorized equipment)란 체결국의 적합성 평가 절차에 따라, 공중전기통신전송망으로의 접속을 승인한 단말 기타 설비를 말한다.

적합성평가절차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란 관계 기술규제, 기준이 만족되어 있는

것, 직접적 또는 간접적 판정에 이용하는 모든 절차를 말하며 그를 위해 행해지는 sampling, 시험(testing), 검사(inspection), 수치평가(evaluation), 증명(verification), 감시(monitoring), 감사(auditing), 적합성 보증(assurance), 자격인정(accreditation), 등록(registration) 또는 허가(approval)를 포함한다.

고도 또는 부가가치 서비스 (enhanced or value-added services)란, 컴퓨터처리응용을 이용하는 전기통신서비스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①format, content, code, protocol 또는 그들과 유사한 고객이 전송하는 정보에 의거하여 실행되는 것;
- ②고객에게 추가적인 다양하고 재구성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는
- ③고객과 축적된 정보와의 상호작용(interaction)을 포함하는 것.

flat-rate pricing basis란, 이용량과 관계없이 단위시간당 고정요금에 의거한 가격설정을 말한다.

기업내통신 (intracorporate communications)란 한 기업이 하는 전기통신에 있어서

- ①각 체결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적으로 또는 그 자회사, 지점 혹은 관련기업간의 또는 그들 자회사, 지점간에 행해지는 것; 또는
- ②그 기업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기본적인 관계를 갖는 한편 계속적 계약 관계에 있는 타사간에 비상업적 base로 행해지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

제재된 내용 이외의 것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망종단점 (network termination point)란 단지 기업내통신에 대해서만 이용되는 공중전기통신 전송망의 최종적인 경계를 말한다.

프로토콜 (protocol)이란 상대하는 두 사람간의 신호 또는 데이터정보의 전송을 위하여 정보교환을 제어하는 하나의 rule 및 format을 말한다.

공중전기통신전송망 (public telecommunication transport network)이란 인정된 망종단점간의 전기통신을 가능케 하는 공중전기통신기반을 말한다.

공중전기통신전송망/서비스란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공중전기통신전송 서비스를 말한다.

공중전기통신전송서비스 (public telecommunication transport service)란 체결국에 의해 명시적으로 또는 실효상, 일반공중에 제공하는 것이 요구되는 통신, 전화, 텔레스 및 데이터전송을 포함하는 모든 전기통신전송서비스를 말하며, 2이상의 지점간에 있어서 고객의 정보형식 또는 내용을 단말에서 단말까지 변경없이 고객 정보의 실시간 전송을 특징적 내용으로 한다.

전기통신이란 어떤 전자적 수단에 의해 행해지는 신호의 송신 및 수신을 말한다.

단말설비 (terminal equipment)란 전자적 수단에 의한 신호처리, 수신, 교환, signaling 또는 송신을 가능케하는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장치이며 무선 또는 유선에 의해 종단점에서 공중전기통신전송망에 접속되는 것을 말한다.